

[등록번호]20120100299

[최초 등록일]2012.07.02

[최종 수정일]2024.11.13

지 트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지트에듀텍엔드네트워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JEET

[본 사 명]: (주)지트에듀텍엔드네트워크

[본사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전화번호]: 031-276-8003

[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31-276-800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내.외국 기업 여부
- 4.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 5.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 6.가맹본부의 재무상황
- 7.가맹본부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8.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9.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가맹사업 경영 사실
- 10.사용을 허용하는 지식 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가맹사업 시작일
2. 지트의 연혁
- 3.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
- 4.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5.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6.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 7.가맹지역 본부의 일반 정보
- 8.광고, 판촉 지출 내역
- 9.가맹금 예치기관
- 10.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등의 체결 내역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형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영업중 부담

3.계약 종료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물품 구입 및 임차

2.거래 주선 대가 내역

3.신용제공등 내역

4.상품,용역,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5.영업지역

6.계약기간,계약의 갱신,연장 종료 해지 수정

7.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8.경업금지,영업시간 제한,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9.광고 및 판촉 활동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가맹점 오픈 절차

2.분쟁 해결 절차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등 내역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교육 훈련의 주요 내용

2.교육 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3.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교육 훈련 불참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브랜드	주 소			
(주)지트 에듀텍엔드 네트워크	지트 (JEET)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3.14	2012.04.20	임남철	031-276-8003	
	법인등록번호	134511-0186658	사업자 등록번호	142-81-4619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남철 (대표이사)	(주)지트 에듀텍엔드 네트워크	지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2012년03월 14일~현재		임남철	031-276-8003	

관계	상호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향호 (감사)	(주)지트 에듀텍엔드 네트워크	지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2012년03월 14일~현재		임남철	031-276-8003	

관계	상호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현준 (사내이사)	(주)지트 에듀텍엔드 네트워크	지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2014년06월 18일~현재		임남철	031-276-8003	

관계	상호	브랜드	주 소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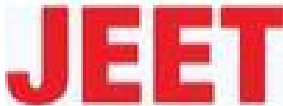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언일 (사내이사)	(주)지트 에듀텍엔드네트웍	지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2012년03월14일~현재		임남철	031-276-8003	

3.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상 호	(주)지트에듀텍엔드네트웍	-
상표(서비스표)		-

5.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296,649	326,367	1,970,282	984,043	269,015	268,286
2022년	2,856,897	372,650	2,484,246	1,328,911	513,138	513,964
2023년	3,512,589	487,125	3,025,464	1,631,831	680,558	541,218

2)당사의 최근 3년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1번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임남철	대표이사	2012.03.14~ 현재	대표이사	(주)지트에듀텍엔드 네트워크업무총괄
			2018.12.13~ 현재	대표이사	(주)현성 / 부동산임대사업&관리업
	임현준	사내이사	2014.06.18~ 현재	사내이사	(주)지트에듀텍엔드네 트워크 가맹점관리
			2018.12.13~ 현재	사내이사	(주)현성 / 부동산임대사업&관리업
	김언일	사내이사	2012.03.14~ 현재	사내이사	(주)지트에듀텍엔드네 트워크 가맹점관리
			2018.12.13~ 현재	사내이사	(주)현성 / 부동산임대사업&관리업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이향호	감사	2012.03.14~ 현재	감사	(주)지트에듀텍엔드 네트워크 감사

8.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서비스표)	관리내용	등록신청일 및 등록번호	출원번호 및 출원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41류	4016362070000 (2020.08.24)	4020190049495 (2019.04.01)	임남철 [(주)지 트에듀 텍엔드 네트워 크]	2030.08.24 (2030.08.24)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지트]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지트의 가맹사업 시작일 2010년 5월 17일입니다.

2. 지트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지트에듀텍엔드 네트워크	지트	임남철	2012년03월 14일~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6-1, 101호(풍덕천동, 현성빌딩)

3. [지트] 업종

영업 표지	업 종	
지 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교과)	수학학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지트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	14	-	12	12	-	11	11	-
서울	-	-	-	-	-	-	-	-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3	13	-	11	11	-	10	10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지트]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3	3	-	2	-	14
2022년	14	1	3	-	-	12
2023년	12	1	-	2	-	11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 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지트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 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평균 매출액	3.3 ㎡당	상한 매출액	3.3 ㎡당 매출액(상)	하한 매출액	3.3 ㎡당 매출액(하)	

			매출 액					
전체	11	3,740,566	8,775	13,373,182	17,400	15,636	178	11곳 산정
서울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10	4,106,903	9,106	13,373,182	17,400	15,636	178	10곳 산정
강원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인터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지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지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	2,58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지역사무소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	-
판촉비	인터넷 등	연중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을 아래 표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상품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19번지 2층	031-261-1102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¹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지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총계			
가맹금	1.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 (10%) 2.콘텐츠제공비 (40%) 3.개원전 교육.훈련 (50%)	A:20,000,000 B:10,000,000 C:10,000,000 D:5,000,000	

A 급지:서울/수도권, 경기도 교육핵심지역 및 광역시 교육핵심지역

B 급지: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지역, 지방 중심도시 교육핵심지역

(지방신도시포함)

C 급지:A급 지역의 동단위

D 급지:B급 지역의 동단위

(교육핵심지역과 비교육핵심지역의 구분은 학원밀집여부와 세대수, 학생수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귀하가 학원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치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가맹계약 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로부터 노하우의 이전이 개시되는 등 학원 가맹점 영업 개시

된 이후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 가맹금의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귀하(영업 양수인)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 부가세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교육.훈련비	최초 가맹금의 50%	가맹점 영업 이후 반환 안됨	교육 실시 이후 반환 되지 않음	

나. 보증금

귀하(영업양수인 포함)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 이행보증금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5,000,000	계약 종료일 및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후 반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다.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25,000,000~10,000,000
가맹금	A급: 20,000,000 B급: 10,000,000 C급: 10,000,000 D급: 5,000,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000

라. 귀하가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단위:원, 부가세포함)	지급기한	면적(3.3㎡당 금액/원)	반환조건
총계		196,020,000	완료시	1,441,323	
인테리어 설비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134,640,000(3.3㎡당 99만원)	공사완료	990,000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3,300,000(돌출간판)			제작 전 계약

	제한>1.물품 구입 및 임차>가.물품 구입 및 임차의 거래상대방 참고	4,400,000(LED간판)	공사완료		취소
		3,300,000(선팅)			
		5,500,000(기타 부착물)			
초도물품(교재 및 업무용 비품)		1회 무상			개점 전 계약취소
냉/난방기		29,920,000 (3.3㎡당 22만원)	구입완료	220,000	설치전 계약취소
CCTV		14,960,000 (3.3㎡당 11만원)	구입완료	110,000	
전화/인터넷 책상/ 걸상 칠판/ 문구		별도금액			입고 전 계약취소

[위표의 개설 비용은 448.8㎡ (136평)기준으로 인테리어는 3.3㎡당 99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위 표의 금액은 당사에서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가맹 학원 설비 정보 제공비 및 기획관리비 비용으로 1,000,000원(부가세별도)의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금전 지급 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단위:원,부과세포함)	지급시기
예치가맹금(계약금)	A급: 20,000,000 B급: 10,000,000 C급: 20,000,000 D급: 5,000,000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 보증금	5,000,000	
중도금	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잔금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지트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귀하는 자신의 책임으로 가맹학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거주인구수등을 고려하여 조언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원전 관리자 교육 이수하여야 함	피성년후견인이 아닐것. 만 20세 이상일 것
강사	개원 10일전까지 본사 교육이수하여야 함.	당사가 정한 채용 기준 준수하여야 함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내역	지급대상자	금액(단위;원.VAT포함) 내역	지급 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개원 이후 교육비	정기 및 비정기 교육	가맹본부	교육내용,시간 및 장소 ,일정과 비용을 교육 실시 3주일 전에 서면/E.mail로통지함.	개별 청구	교육 실시후 반환안됨

구분	내역	지급대상자	금액(단위;원.VAT포함) 내역	지급 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특별교육	가맹본부	교육내용,시간 및 장소 ,일정과 비용을 교육 실시 2주일 전에 서면/E.mail통지함		
정기납입경비	월 회원비 (로열티)	가맹본부	1명 ~ 50명 : 200,000원 51명~100명 : 400,000원 101명~200명 : 800,000원 201명~300명:2,400,000원 301명~400명:3,200,000원 401명~500명:4,000,000원 501명 ~ : 5,000,000원 (단, 교재를 월별로 사용 할 경우 로열티를 면제한다.)		소멸성 비용 (지체일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지체가산금 연 20% 납입)
학원관리프로 그램		가맹본부	월220,000원		프로그램 사용료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비	전국 및 지역단위의 광고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활동 시작후 반환 안됨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협력업체	3,300,000(돌출간판) 4,400,000(LED간판) 3,300,000(선팅) 5,500,000(기타부착물) (448,8㎡ 기준)	간판변 경 후 5일 이내	CI ,BI를 개발 및 투자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당사의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학원내의 간판변경,차량의변경 도색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이자			해당없음		

가.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미포함)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여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맹금의 10%의 금액(부가세포함)을 갱신, 연장과 동시에 갱신비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3)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은 당사에 계약이행 보증금과 **최초 가맹금의 50%(교육,훈련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 준합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학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지트 가맹학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 · 상호 · 로고 · 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 · 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에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무상으로 공급받은 교사용 및 상담용 교재, 교안 등을 반환하고, 지트 가맹학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당사의 상표 ·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당시 당사에게 공급받은 교재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하에 교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 ·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지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 A/S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지트]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지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지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교재)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교재)·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악어수학 교재(본책)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 계약 해지	
악어수학교재(부록책)			
악어수학 숙제노트			
악어수학 오답노트			
분기별 진단평가지			

[귀하는 지트의 필요한 가맹사업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없이 타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교재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교재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교재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교재를 제 3자에게 제공, 대여 또는 불법과외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교재)	권장가격(단위: 원)
악어수학 교재 본책	10,000
악어수학 교재 부록책	10,000
악어수학 숙제노트	1,000
악어수학 오답노트	1,000
닥터J	13,000
지트 만점대비	13,000
분기별 진단평가지	20,000
창의융합사고력	12,000
1170Q	20,000
200제	10,000
300제	10,000
유익선	10,000

4.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동일한 매뉴얼/교재와 교육컨텐츠 및 동일한 교육방식에 의한 학원사업	지트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

반경 1.5 Km	계약서 명시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의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동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0%	0.0%	0.0%	0.0%

나.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가.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7]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및 정기납입경비(회원비,이용료)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정보공개서상의 갱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연장 기준 등의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학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등록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9조 3항 (가맹계약의 갱신등)

라.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6]가지로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제 3조의 가맹학원명을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을”이 제6조 [“을”의 자격요건과 자격유지 의무]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을”이 정기납입경비(회원비, 이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을”이 개원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5. “을”이 영업개시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을”이 영업비밀, 경업금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을”이 “을”이 제24조 [경영지도] 제3항에 규정된 “갑”의 정당한 규제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8. “을”이 제 25조 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을”이 제27조 [“을”의 기타 권리와 의무]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을”이 제29조 [교재 등의 공급] 제4, 5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1. “을”이 가맹학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갑”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13. “을”이 본 가맹학원과 동종 학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학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4. “을”이 가압류 · 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15.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 “을”이 정기납입경비(월 회비) 납부를 이상 의도적으로 6개월이내 3회이상 지체한 경우	제 3 9 조 1 항 (계약의 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0조1항(계약의 즉시 해지)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학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학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학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학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학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학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영업 양수인은 신규 가맹점 사업자에 준합니다. 단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영업 양수인의 경우 최초가맹금 50%(교육,훈련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학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학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학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 사실 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	영업상속인은 교육,훈련비를 부담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지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동일한 매뉴얼/교재와 교육컨텐츠 및 동일한 교육방식에 의한 학원사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조절함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강사, 직원 수 및 가맹학원 근무 여부

귀하는 가맹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강사(피고용인)를 채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당사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학원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교육장비 (설비, 시설, 기타 회계)	담당자 학원 방문 → 교육장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분기당 1회 이상	가맹학원관리팀	
교재관리 (온라인프로그램)	담당자 학원 방문 → 교재관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가맹학원관리팀	
강사채용 및 관리	담당자 학원 방문 → 강사채용 및 관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학원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사업자부담	비고
공동광고 행사	원생모집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원생모집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공동판촉 행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제반 판촉활동을 계획할 경우에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 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 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지트 브 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 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교재 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한 교재를 가지고 불법 과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 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 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 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3~58]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금10,000,000원~25,000,000원 (부가세포함) + 가맹사업 개시 비용 196,020,000원(부가세포함/448.8㎡ 기준임)		206,020,000 ~221,02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00,000,000 원 ~50,000,000 원(부가세포 함)
점포계약	-점포 입지 선정 -점포 개발 착수 -상권 분석	3~4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4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15일~20일	IV.가맹점사업 자의 부담중 영업개시이전부 담 '라'참조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7~8일	
교육	-강사, 가맹원장, 교수부장, 총무 교 육	13일	
개원	- 가맹학원 개설 및 영업시작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학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분쟁
제 49 조 [분쟁의 해결 절차 등]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우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맹사업법” 소정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점 포 환 경 개 선 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행사시 지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상품, 설비(집기),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회계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회계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자금지원은 본인 신용으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가.개원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원 전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소요시간	장소
개원전 교육	교수부 교육 경영지원 교육 관리자 교육	12h 8h 2	본사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절차 및 방법
정기.비정기교육	교육내용,시간 및 장소 ,일정, 비용을 교육 실시 3주일전에 서면/E.mail로 통지함.
특별교육	교육내용,시간 및 장소 ,일정, 비용을 교육 실시 2주일전에 서면/E.mail로 통지함.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원전 교육	22시간	가맹금에 포함됨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특별 교육	매년 교육계획을 사전에 통지함	실비수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이수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제 15 조 [강사 채용 및 교육] ① “을”은 가맹학원 운영의 동일성 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갑”의 교육 방침에 따라 학원 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피고용인을 채용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가맹학원의 개원 10일 전까지 “본사 기본 교육”을 전원 이수시켜야 하며, 특히 강사 채용에 등록된 강사는 본사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을”이 채용한 피고용인의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채용계약서를 요청 시 “을”은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이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 피고용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해당 피고용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갑”의 해임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가맹학원 운영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숙박비, 식대 등 실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16조 규정의 가맹학원 개원 승인을 보류하는 등 그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 (강사채용 및 교육)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31-276-80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상담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jeet.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입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2021년.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	---	------------

신청인의 계좌	
---------	--

가맹본부의 계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